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25
----------	------

2022년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3. 상정일자 :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6월 1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
-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47-1
- 시설규모 : 연면적 453.7㎡, 총 5층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진료실, 아동돌봄실
- 인력운영 : 5명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3. 1. 1.~ 2025.12.31.)
- 위탁업무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일반 상담 및 법률,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실, 한국어자격증반 등 교육사업 운영
 - 문화체험 행사, 의료지원, 커뮤니티사업 등 운영
- 소요예산 : 338,000천원(20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257,220천원, 운영비 41,000천원,
사업비 39,79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2.05.12)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기관(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노무사, 봉사자, 종교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및 제18조

제7조(지원의 범위)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6., 2021.7.20.>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2021.7.20>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재위탁 추진계획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922, 2022.4.13.)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광모)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¹⁾(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에 따라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지원, 한글·컴퓨터 교육 및 의료지원, 문화체험 행사 등임.
- 외국인노동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²⁾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외국인 지원시설의 하나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³⁾와 상기의 동 조례 제7조⁴⁾에 따라 서울시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에 필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 3)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4)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2019.9.26, 2021.7.20>

요한 각종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함.

- 동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은 순수 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외국인지원시설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불편·부당사항 해소를 권익보호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한 특화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 금번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성동센터를 포함하여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지원
 9.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현황>

연번	시설명	운영기관	소재지	규모	인력	개설일	'22년 예산 (백만원)	비고 (위탁기간)
1	성동	(사)노동인권회관	성동구 무학로	453㎡	5명	'01.12.14	338	서울시소유단독시설 (2020.1.1.~2022.12.31)
2	성북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성북구 오패산로	23㎡	5명	'09.04.30	256	복지관 활용 임차 (2020.1.1.~2022.12.31)
3	금천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	금천구 가산로	66㎡	5명	'07.05.01	243	복지관 활용 임차 (2020.1.1.~2022.12.31)
4	양천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양천구 목동동로	70㎡	5명	'09.04.28	258	복지관 활용 임차 (2020.1.1.~2022.12.31)
5	은평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은평구 은평로	37㎡	5명	'08.03.13	243	복지관 활용 임차 (2020.1.1.~2022.12.31)
6	강동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동구 성안로	46㎡	5명	'08.03.15	263	복지관 활용 임차 (2020.1.1.~2022.12.31)

○ 6개 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위탁 추진 현황>

○ 성동 : 성동구 소관 위탁 또는 직영 후('01.~'15.), 1차 공모('15.~'16.), 2차 재계약('17.~'19.), 3차 공모('20.~'22.)
○ 성북 : 1차 ~ 4차 연단위 위탁('09.~'13.), 5차 공모('14.~'16.), 6차 재계약('17.~'19.), 7차 공모('20.~'22.)
○ 금천 : 1차 ~ 6차 연단위 위탁('07.~'14.), 7차 공모('14.~'16.), 8차 공모('17.~'19.), 9차 재계약('20.~'22.)
○ 양천 : 1차 ~ 4차 연단위 위탁('09.~'13.), 5차 재계약('14.~'16.), 6차 공모('17.~'19.), 7차 재계약('20.~'22.)
○ 은평 : 1차 ~ 5차 연단위 위탁('07.~'13.), 6차 재계약('14.~'16.), 7차 재계약('17.~'19.), 8차 공모('20.~'22.)
○ 강동 : 1차 ~ 5차 연단위 위탁('08.~'13.), 6차 재계약('14.~'16.), 7차 재계약('17.~'19.), 8차 공모('20.~'22.)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금번 동의 대상이 되는 성동센터 또한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現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이 재계약을 포기하여 재위탁(공모)을 추진하게 되었음.

<동의대상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구분	수탁법인	위탁기간	위탁방법
성동	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	'15.3.1~'22.12.31.(7년10개월)	재위탁(공모)
금천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	'17.1.1.~'22.12.31.(6년)	재계약

- 또한 성동센터의 경우 타 센터(사무형 위탁)와 달리 시설형 위탁으로 서울시 소유 단독시설을 사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1.3.30. 성동구에서 서울시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통보로 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계용역 추진('21.6.24.~'21.9.17.), 공사시행('22.7.~'22.10. 예정) 후, 실시결과를 '22.12.31.일자까지 관할 구청에 보고해야 함.
- 시행될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어 위탁사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장기간 센터 사무를 수행한 현재 수탁기관의 재위탁 포기로 수탁기관의 변경이 예상되는 바, 민간 위탁 시설운영 및 사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는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⁵⁾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⁶⁾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⁷⁾에 재한외국인의 생활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

5)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2019.9.26, 2021.7.20>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지원
9.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 있는 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교육 등 각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 「민간위탁조례」 제4조⁸⁾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노무, 법률, 출입국, 산재, 의료, 생활 관련 상담, 한국어 교육,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⁹⁾에서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외국인노동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9)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 의견

- 동 위탁 사무는 서울시 재한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노무·법률상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성동센터의 경우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포기로 새로운 수탁기관의 변경이 예상되는 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시설운영 및 사무를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집행부는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25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47-1
- 시설규모 : 연면적 453.7㎡, 총 5층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진료실, 아동돌봄실
- 인력운영 : 5명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3. 1. 1. ~ 2025.12.31.)

○ 위탁업무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일반 상담 및 법률,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실, 한국어자격증반 등 교육사업 운영
 - 문화체험 행사, 의료지원, 커뮤니티사업 등 운영

○ 소요예산 : 338,000천원(20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257,220천원, 운영비 41,000천원, 사업비 39,79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2.05.12)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기관(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노무사, 봉사자, 종교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및 제18조

제7조(지원의 범위)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6., 2021.7.20.>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2021.7.20>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922, 2022.4.13.)

※ 작성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유지영(☎ 2133-5078)